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 민감정보 이용 많은 의료분야에 특히 중요 -

보건의료와 관련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관련 데이터를 함부로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안내를 담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2020년 9월 발간한 바 있으며, 이후 2022년 1월 개정을 거쳤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 1. 19. 최근 해당 가이드라인을 추가 개정하였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1. 배경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점점 진화하는 AI가 의료분야에서 활용되고자 한다면 그 기반이 될 데이터가 중요하고, 향후 질병 예방·치료 등에 있어 더 방대한 정보는 해결방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데이터 활용은 효율성 개선으로 이어질 단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 활용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의 위험 노출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개인정보는 환자의 병력·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더욱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이에 추가적으로 유전정보와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등을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있는데, 보건의료데이터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더욱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9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2022년 1월 개정한 바 있는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여 재차 2024. 1. 19. 추가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새로 발표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명처리 방법

- 유전체 데이터는 데이터 파일 형태에 따라 주요 식별정보를 제거·대체하는 방식 등 (예: 염기서열 정보 중 희귀 변이정보 및 단연쇄 반복 정보는 처리목적과 직접 관계 없을 시 삭제 또는 대체)으로 가명처리 활용

가명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입력데이터는 자연어 처리기술 등을 활용하여 정형 데이터로 변환 후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을 거쳐 가명처리 활용 - 음성 데이터의 경우 문자열로 변환하여 식별정보 삭제·대체 등을 거치거나 필요 시 노이즈 방식 등 거쳐 가명처리 활용 -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안전조치 반영
가명정보 법적책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고의 없이 특정 개인식별정보 생성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음 - 해당 정보처리 즉시 중지 및 회수·파기 필요 -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유출 문제 발생 또는 고의로 재식별을 하는 경우 등에만 제재
의료영상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식별가능 정보를 일부 삭제·대체하여 처리 - 이미지상의 개인식별 위험이 있는 정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여 처리 - 문신, 보형물 등 개인식별 가능한 신체적 특징은 마스킹 등으로 식별성을 낮추어 처리 - 입체 영상 재건 기술을 통한 복원으로 개인식별 위험성이 있는 컴퓨터 단층촬영 등 이미지 집합체는 처리 목적달성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마스킹 등으로 처리

3. 시사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2년 10월 '의료 마ीड데이터 산업의 경제적 분야 영향' 보고서를 발간하며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시장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조 5,553억 원 ~ 9조 7,704억 원 규모로 성장을 이룩할 것이라 전망한바 있습니다. 시산업이 화두가 되고 점점 초연결화 되어가는 현재, 보건의료 데이터의 폭발적인 활용은 더 이상 막기가 어려운 거대한 흐름이며, 그만큼 민감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특히, 의료기술 발전만을 생각하며 함부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 할 필요가 있고, 연구를 하기 전 또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과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훌륭한 지정표가 되어줄 것으로 보이며, 2024. 1. 29.까지 의견수렴 기간이므로 향후 확정이 되면 더욱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TMT팀은 4차산업혁명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s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hwawoo.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이창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80

E. cwlee@yoonyang.com

강석준

변호사

T. (+82) 2 6182 8505

E. kangsj@yoonyang.com